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1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한지아 · 김승수
진종오 · 박덕흠 · 김 건
우재준 · 김은혜 · 서범수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,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, 보장범위,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,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,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·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,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75조의3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하기”를 “지원하거나 상해를 보상하기”로, 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